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Part 4

어린이제품 면제 신청



01 면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02 면제신청 방법

01 면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제조·수입업자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 전시회·박람회 출품을 위해 제조·수입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을 통해 면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은 안전인증·확인대상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은 면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면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분류	요건	담당기관(연락처)
연구·개발 또는 수출 전시회·박람회	·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22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관련법령

-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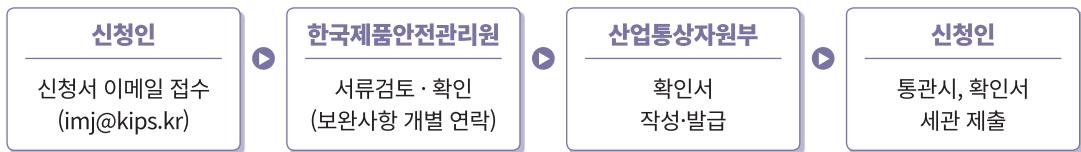
관련법령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⑧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02 면제신청 방법

국내제조 제품은 출고전, 외국수입제품은 통관전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신청 서류 접수 및 결과는 이메일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업지원 -> 면제확인 -> 어린이제품 -> 면제절차



[구비서류]

- 공통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사업자등록증
- 해당조문별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대상품목 구분	내용	첨부서류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제신청서, 용도설명서 제품설명서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확인서(수출하는 경우)
	전시회나 박람회의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제신청서, 용도설명서 제품설명서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출품계약서 전시회참가확인서 또는 부스배치도